

# 행동강령

본 행동 강령은 Public Health (General) Regulation 2002 (공공보건 (일반)법령)에 의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 1 정의

본 행동 강령에서 언급하는 **보건 종사자**, **보건 등록 법령**, **보건 서비스**는 *Health Care Complaints Act 1993*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주의사항.** *Health Care Complaints Act 1993*에서는 해당 용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보건 종사자**는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보건 등록 법령에서 정한 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음).

**보건 등록 법령**은 다음 법령들을 지칭한다:

<i>Chiropractors Act 2001</i>	<i>Dental Technicians Registration Act 1975</i>	<i>Dental Practice Act 2001</i>
<i>Medical Practice Act 1992</i>	<i>Nurses and Midwives Act 1991</i>	<i>Optical Dispensers Act 1963</i>
<i>Optometrists Act 2002</i>	<i>Osteopaths Act 2001</i>	<i>Pharmacy Practice Act 2006</i>
<i>Physiotherapists Act 2001</i>	<i>Podiatrists Act 2003</i>	<i>Psychologists Act 2001.</i>

**보건 서비스**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포괄한다: (a) 의료, 병원, 간호 서비스, (b) 치과 서비스, (c) 정신 보건 서비스, (d) 의약품 서비스, (e) 구급차 서비스, (f)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g) 보건 교육 서비스, (h) (a)-(g)항에서 언급된 서비스의 실행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 (i) 족부 질환치료사, 척추 교정치료사, 지압치료사, 검안사, 물리치료사 및 안경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j) 영양사, 안마사, 자연요법치료사, 침술사, 직업 치료사, 언어 치료사, 청각치료사, 청력 측정사 및 켈트겐 기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k) 기타 대해 보건 분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k1) 병병리학 서비스, (l) 본 법령의 목적에 따라 보건 서비스로 법령이 지정한 서비스.

## 2 행동 강령의 적용

본 행동 강령은 아래에 해당하는 보건 종사자가 제공하는 보건 서비스에 적용된다:

- 보건 등록 법령에 따라 등록이 요구되지 않는 보건 종사자 (등록 취소된 보건 종사자들도 포함) 및
- 보건 등록 법령에 따라 등록된 보건 종사자로서 해당 등록 분야와 관계없는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 종사자.

**주의사항.** 보건 종사자는 본 강령에 적용되는 보건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기타 요구조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건 등록 법령 제 2A 부에 적시된 요구조건과 피부 침투 시술과 관련된 규제 가 이에 해당한다.

## 3 보건 종사자는 안전하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보건 종사자는 안전하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보건 종사자는 위 (1)항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다음의 원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 보건 종사자는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필요한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 보건 종사자는 자신의 경험이나 교육 분야를 벗어나는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 보건 종사자는 고객의 필요에 부응하는 치료만을 제공해야 한다,
  - 보건 종사자는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치료의 한계를 인식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다른 유능한 보건 종사자에게 고객의 치료를 위임해야 한다,
  - 보건 종사자는 필요한 경우 자신의 고객에게 추가 소견이나 서비스를 구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 보건 종사자는 필요한 경우 자신의 고객이 다른 적절한 보건 전문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 보건 종사자는 자신의 고객이 현재 받고 있는 치료가 있을 경우 그것을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알리도록 권장해야 한다,
  - 보건 종사자는 자신이 제공하거나 처방하는 요법과 치료가 처방전 유무와 상관없이 고객이 복용하고 있는 다른 약물이나 받고 있는 치료에 대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 보건 종사자는 고객 상담 중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우발적 사고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응급 처치 도구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 보건 종사자는 고객 상담 중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사고에 대해서는 구급차 서비스와 같은 적절한 응급 처치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 4 전염성 질환 진단을 받은 보건 종사자

- 고객에게 전염을 야기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 진단을 받은 보건 종사자는 고객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위 (1)항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고객에게 전염을 야기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 진단을 받은 보건 종사자는 그 질환에 대한 고객 전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의료인의 조언을 받아 적절히 자신의 시술 방법을 조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 보건 종사자는 특정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를 장담하지 않아야 한다

- 보건 종사자는 자신이 암을 포함한 기타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 의지가 있다고 장담하지 말아야 한다.
- 보건 종사자는 그러한 질병들을 치료하거나 제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냐 의지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다.

## 6 보건 종사자는 감염 통제를 위한 표준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 보건 종사자는 감염 통제를 위해 시술 과정에서 표준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 위 (1)항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법령 51(3)항의 범주 내에서 피부 침투 시술을 시행하는 보건 종사자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시술 관련 규제들을 준수해야 한다.

## 7 치료 조언과 관련해서 적절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 보건 종사자는 고객이 정규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싶어하거나 이들로로부터 계속 치료를 받고자 할 때 이를 만류하려 해서는 안 된다.
- 보건 종사자는 고객이 적절한 정보를 근거로 스스로의 건강관리에 대해 선택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보건 종사자는 고객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동료와 다른 보건 종사자 및 기관들과 의견을 나누고 공조해야 한다.
- 보건 종사자는 자신의 고객에 대한 다른 보건 종사자의 치료가 심각한 우려를 야기한다고 판단할 경우 *Health Care Complaints Commission* (보건 민원 심의회)에 해당사안을 조회해야 한다.

## 8 알코올이나 약물의 영향 하에서 시술해서는 안 된다

- 보건 종사자는 알코올이나 불법 약물의 영향 하에서 시술해서는 안 된다.
- 보건 종사자가 처방전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을 경우 처방을 한 의료인으로부터 약품이 본인의 시술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언을 받아야 하고, 자신의 능력이 손상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고객 치료를 자제해야 한다.

## 9 아래에 해당하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보건 종사자에 대해서는 시술이 금지된다

시술능력을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혹은 고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결함, 장애, 상태 또는 이상(알코올, 또는 처방전 유무와 상관없이 약물 중독도 포함)이 있을 경우 해당 보건 종사자에 대해서는 시술이 금지된다.

## 10 보건 종사자는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 보건 종사자는 다른 보건 종사자들이나 의약품 또는 치료 기구 및 용품공급업체들로부터 고객을 소개하는 대가로 금전적 뇌물이나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 보건 종사자는 다른 보건 종사자들로부터 고객을 소개 받는 대가로 금전적 뇌물이나 선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 보건 종사자는 고객의 건강이나 복지를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목적 외의 서비스와 치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11 보건 종사자는 치료를 위해 임상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보건 종사자는 적절한 임상적 근거 없이 질병이나 상태를 진단하거나 치료해서는 안 된다.

## 12 보건 종사자는 고객을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

- 보건 종사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자신의 자격이나 연수 경력, 전문 협회 가입 여부 등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잘못된 정보 제공이나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 보건 종사자는 고객으로부터 문의를 받을 경우 자신의 자격이나 연수 경력, 전문 협회 가입 여부 등에 대해 진실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보건 종사자는 제공하는 치료나 서비스의 효능에 대해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그 효능을 직접적으로, 또는 광고나 홍보물을 통해 과장하여서는 안 된다.

## 13 보건 종사자는 고객과 성적 또는 부적절한 사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 보건 종사자는 고객과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되며 기타 다른 밀접한 사적 관계를 가져서도 안 된다.
- 과거에 치료했던 고객이라 할지라도 이들과 성적 또는 기타 밀접한 사적 관계를 맺을 경우, 치료행위로 인한 관계가 종결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만 가능하다.

## 14 보건 종사자는 사생활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보건 종사자는 고객의 개인 정보에 대해 해당 주 및 연방 정부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15 보건 종사자는 적절한 기록 유지 의무를 가진다

보건 종사자는 개별 고객 상담에 대해 정확하고 읽기 쉽게 기록된 상담 시점의 임상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 16 보건 종사자는 적절한 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보건 종사자는 자신의 시술과 관련하여 적절한 면책 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 17 특정 보건 종사자는 해당 강령 및 기타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 보건 종사자는 자신이 시술을 시행하는 모든 사업장에 다음 문서의 사본을 게시해야 한다:
  - 본 행동 강령
  - 고객이 *Health Care Complaints Commission* 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가 담긴 문서로서, 보건부 사무총장 승인 양식으로 작성된 문서
  - 위 문서들의 사본은 해당 사업장에 임장하는 고객에게 잘 보이도록 적절한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 본 조항은 다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공중 보건 제도 종사자의 사업장 (*Health Services Act 1997* 의 6 항에 근거),
  - 사립 병원이나 주간 시술 센터 (*Private Hospitals and Day Procedure Centres Act 1988* 에 근거),
  - 뉴 사우스 웨일즈 주의 응급 서비스 시설 (*Health Services Act 1997* 에 근거),
  - 인가된 시술자들의 사업장 (연방 정부의 *Aged Care Act 1997* 범주 내 적용).

# 자신이 받는 보건 서비스에 대해 우려 사항이 있습니까?

미등록 보건 종사자들에게 해당되는 본 행동 강령은 해당 시술자들로부터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지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받은 보건 서비스에 우려 사항이 있으면 시술자에게 즉시 상담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에 보건 서비스 시술자가 그러한 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시술자의 조치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아래 연락처를 이용하여 *Health Care Complaints Commission* (보건 민원 심의회)의 문의 서비스로 연락하시면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02) 9219 7444번, 또는 무료 전화 1800 043 159번.

민원 내용이 성적, 또는 물리적 폭행이나, 개인의 건강 및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일 경우에는 위원회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 Health Care Complaints Commission란 무엇인가?

*Health Care Complaints Commission* (보건 민원 심의회)는 공중의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 서비스 관련 불만 사항을 다루는 독립 기관입니다.

### 기타 언어 지원 서비스

심의회에서는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역 지원이 필요하시면 통번역 서비스 (TIS National), 131 450번으로 전화하여 *Health Care Complaints Commission*, 전화 1800 043 159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으로 연결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 상세 정보

*Health Care Complaints Commission*에 관한 상세 정보는 웹사이트 [www.hccc.nsw.gov.au](http://www.hccc.nsw.gov.au)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ealth Care Complaints Commission 연락처

사무실 주소: Level 13, 323 Castlereagh Street, SYDNEY NSW 2000,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우편 주소: Locked Mail Bag 18, STRAWBERRY HILLS NSW 2012  
전화: (02) 9219 7444 또는 뉴 사우스 웨일즈 주 내 무료 전화1800 043 159번  
팩스: (02) 9281 4585  
이메일 주소: [hccc@hccc.nsw.gov.au](mailto:hccc@hccc.nsw.gov.au)

청각장애자용 전화 사용자는 다음 전화 번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2) 9219 7555